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08,385,637	18,251,569
일반회계	491,115,149	14,733,454
특별회계	117,270,488	3,518,115
공기업특별회계	48,137,670	1,444,130
상수도사업	11,737,753	352,133
하수도사업	36,399,917	1,091,998
기타특별회계	69,132,818	2,073,985
의료급여기금	1,869,847	56,095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167,860	5,03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70,000	2,100
농공지구조성	26,769,039	803,071
중소기업육성자금	5,629,286	168,87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158,025	34,741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03,515	6,10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821,500	24,645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19,821,000	594,630
수질개선관리	4,740,296	142,209
보건진료	1,736,790	52,104
농업발전기금	6,145,660	184,37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5,1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도시과 산업단지 정책사업의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